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석면건축물 및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○군

내 용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(이하 “석면해체·제거작업”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, 작업 내용, 작업 기간, 그 밖에 석면해체·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.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¹⁾를 제외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.

1) 해체·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로써 석면이 1%(무게 퍼센트)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

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·제거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.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 및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하고,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석면 비산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 및 비산정도 측정결과 미공개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아래 [표1]과 같이 2016년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실시한 3개 사업장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.

[표1] 석면해체·제거작업계획 미공개 사업장 현황

연번	건축물명	위치(소재지)	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간		면적(m ²)	비고
			시작일	종료일		
1	축사 외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-0	2016-03-07	2016-03-31	1,585	
2	(주)○○○○○○○ 00동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	2016-04-01	2016-04-10	620	
3	주택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0-0외 6필지	2016-04-13	2016-05-31	690	

※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또한 아래 [표2]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제출

한 8개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.

[표2]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미공개 사업장 현황

연번	건축물명	위치(소재지)	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간		면적(㎡)	비고
			시작일	종료일		
1	축사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0	2015-12-21	2015-12-31	763	
2	고속도로 방음벽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	2015-12-31	2016-02-29	686	
3	○○○○(주)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	2016-02-02	2016-02-23	2,651	
4	사무실, 창고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	2016-02-05	2016-02-29	537	
5	주택 등 (가옥8, 공장1)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0	2016-06-14	2016-08-20	2,541	
6	울산항 건축물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-0	2016-08-08	2016-08-30	821	
7	주택 등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0	2016-09-03	2017-08-29	654	
8	철근콘크리트조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-0	2017-11-07	2017-11-15	585	

※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2. 석면해체·제거작업 비산정도 측정 및 결과 미공개

○○군 ○○○○과는 아래 [표3]과 같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·제거하는 1개 사업장의 사업장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고,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.

[표3] 석면 비산정도 미측정 해체·제거 사업장 현황

연번	건축물명	위치(소재지)	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간		면적(㎡)	비고
			시작일	종료일		
1	○○○○○○ 울산사업장 A,B,C동	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읍 ○○리 000	2016-07-25	2016-08-30	5,910	

※ ○○군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○○군수는

[주의] 관할구역에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 해제·제거작업 시 작업계획 및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